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690호)	김위상 의원	2024. 10. 15.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 회의(2025.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 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809호)	서명옥 의원	2025. 7. 2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 회의(2025.11.14.)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 2. 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6. 2. 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약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인체 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27조의2제2항제2호).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8조제3항제4호의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3호 중 “(태반은 제외한다)”을 “[태반,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8조제3항제4호의3 중 “내용을”을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2. (생략) 3. <u>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u> 4. (생략) ③ (생략) 제68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략)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u>내용을</u>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태반, 인체유래 (人體由來)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u>제외한다</u>]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 ----- <u>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u>

리프로그래밍에 입력하지 아니 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 14. (생 략) ④ (생 략)	<u>보를</u> ----- ----- 5. ~ 1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